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최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최혁진 · 손 술 · 김선민
전진숙 · 전종덕 · 문금주
김종민 · 정혜경 · 조계원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협약이 어려운 실정임.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각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·예산은 기획예산처,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부족하고, 이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.

이에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

로 세분화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,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행정부 전체로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를 반영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, 근무시간 면제 한도 역시 각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제1항).

나. 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8조제1항).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선거관리위원회·행정부·특별시”를 “선거관리위원회,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행정부”라 한다), 특별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인사혁신처장”을 “국무총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·의결에 관한 경과조치)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에 맞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심의·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노동조합의 설립)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 <u>선거관리위원회</u> · <u>행정부</u> · <u>특별시</u> 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.	제5조(노동조합의 설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선거관리위원회</u> ,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 <u>행정부</u> ”라 한다), <u>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·복지,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· <u>인사혁신처장</u> (행정부를 대표한다)·특별시장·광역시장	제8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무총리</u> ----- -----

